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개정이유서

1. 개정이유

무선통신 기준 다양화 및 비화재정보 개선대책에 따른 기술기준 개선 및 보완

2. 주요내용

가. 작동 시 음향으로 경보하는 음향장치 설치규정(안 제3조제6호)

나.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하는 속보기 구조 및 기능 신설(안 제3조제8호 · 제3조제16호 · 제5조제1의2호)

다. 무선식 감지기와 접속하는 문화재용 속보기 구조 및 기능 신설(안 제3조제13호 · 제3조제14호 · 제5조의2)

라. 기록장치 기준 도입(안 제5조의3)

마. 다매체신고시스템 신고를 위한 인터페이스 정의 등(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개정안 전문, 신 · 구조문대비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속보설비"란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알리는 설비를 말한다.
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이하 "속보기"라 한다)"란 수동작동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화재신호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화재 발생을 경보하고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통신망을 통한 해당 화재발생,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등을 음성으로 통보하여 주는 것(이하 "속보"라 한다)을 말한다.
3.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이하, "문화재용 속보기"라 한다)"란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접속(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하는 방식인 것을 말한다.

제3조제6호 중 "작동 여부를 표시하는 장치를 하여야"를 "음향으로 경보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속보기(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는 다음 각 목의 장치를 전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작동 시 작동여부를 표시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동 시 그 작동시간과 작동횟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14호라목 중 "168시간 이내의"를 "24시간 이내"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무선식 감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14호마목 전단 중 "작동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무선식 감지기"를 "무선식 감지기의 화재 작동 상태"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공용"을 "공통"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무선식 감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문화재용 속보기는 무선식감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무선식감지기에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발신하는 장치 및 무선식감지기의 재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속보기 전면에는 수동으로 속보할 수 있는 수동작동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하는 속보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의2에 의한 각각의 출력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작동,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의2의 각 출력신호(이하 "예비·축적·화재경보신호" 이라한다)에 의한 작동을 구분할 수 있는 적색의 표시등 또는 적색으로 표시하는 장치(이하 "표시장치"라 한다)를 각각 전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장치 부근에 각각의 작동을 구분할 수 있는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통신망에 의해 소방관서 이외에 관계인 2명 이상에게 수동작동 스위치에 의한 작동 및 예비·축적·화재경보신호에 의한 작동을 통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1호 중 "작동신호"를 "속보기(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작동신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속보기를 수동"을 "수동"으로, "적색 화재표시등"을 "화재표시등"으로, "하며 화재표시 및 경보는 수동으로 복구 및 정지시키지 않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전단 중 "연동 또는 수동 작동"을 "작동신호(화재경보신호를 포함한다) 또는 수동작동스위치"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화재발생"을 "관계인 2명 이상의 연락처, 화재발생

"으로 한다.

1의2.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를 접속하는 속보기는 수동작동스위치를 작동하거나 예비·축적·화재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예비경보신호를 수신하거나 축적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20초 이내에 통신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관계인 2명 이상에게 예비경보신호 및 축적경보신호에 의한 작동을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각각의 표시장치 및 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여야 한다.

나. 화재경보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작동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하여야 하며 통신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관계인 2명 이상에게 화재경보신호에 의한 작동 및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작동을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각각의 표시장치 및 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표시장치 점등 및 음향장치에 의한 경보는 수동으로 복구하거나 정지시키지 아니하는 한 지속되어야 하며 음향장치의 작동을 정지된 상태에서도 새로운 예비경보신호, 축적경보신호 또는 화재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음향장치의 작동정지를 해제하고 음향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속보기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4호"를 "속보기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2의2호가목에 의한 통신점검신호 발신 개시로부터 제3조제14호바목에 의한 통신점검신호 및 재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소요시간은 200초 이내이어야 하며, 수신 소요시간을 초과할 경우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제3조제14호다목 및 라목"을 "제3조제14호다목, 라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1항제2의2호에 해당하는 통신점검신호 및 재확인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감지기 내역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기록장치)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를 접속하는 속보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록장치는 999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용량이 초과할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자동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2. 속보기는 임의로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저장된 데이터는 속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복사 및 출력도 가능하여야 한다.

4.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데이터의 발생시각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on/off 상태

나. 제5조제1의2호가목에 해당하는 예비경호신호 수신 내역, 축적정보신호 수신 내역 및 관계인 통보 내역

다. 제5조제1의2호나목에 해당하는 화재정보신호 수신 내역,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조작 내역 및 관계인 통보 내역

라.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스위치의 조작 내역

제13조제2호 중 "제조년도"를 "제조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해당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접속가능 수신기 형식승인 번호(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8. 주의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제15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성능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 (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속보설비”란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알리는 설비를 말한다.		1. “화재속보설비”란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알리는 설비를 말한다.		1. “화재속보설비”란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알리는 설비를 말한다.
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이하, “속보기“라 한다)“란 수동작동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화재신호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을 경보함과 동시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통신망을 통한 해당 화재발생 및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등을 음성으로 통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이하 “속보기”라 한다)”란 수동작동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화재신호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화재발생을 경보하고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통신망을 통한 해당 화재발생,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등을 음성으로 통보하여 주는 것(이하 “속보”라 한다)을 말한다.		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이하 “속보기”라 한다)”란 수동작동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화재신호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화재발생을 경보하고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통신망을 통한 해당 화재발생,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등을 음성으로 통보하여 주는 것(이하 “속보”라 한다)을 말한다.
3.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이하, “문화재용 속보기“라 한다)“란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접속(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하는 방식인 것을 말한다		3.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이하, “문화재용 속보기”라 한다)”란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접속(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하는 방식인 것을 말한다		3.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이하, “문화재용 속보기”라 한다)”란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접속(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하는 방식인 것을 말한다

다.

제3조(구조) 속보기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전면에는 주전원 및 예비전원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와 작동 시 작동 여부를 표시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7. (생략)

8. 작동 시 그 작동시간과 작동횟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9. ~ 13. (생략)

14. 제13호의 기준에 따른 문화재용 속보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 다. (생략)

라. 자동적으로 무선식 감지기에 168시간 이내의 주기

다.

제3조(구조) -----
-----.

1. ~ 5. (현행과 같음)

6. -----

----- 음향으로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
-----.

7. (현행과 같음)

8. 속보기(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목의 장치를 전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작동 시 작동여부를 표시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동 시 그 작동시간과 작동횟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9. ~ 13. (현행과 같음)

14.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24시간 이내 -----

마다 통신점검 신호를 발
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마. 작동상태가 지속되고 있
는 무선식 감지기를 화재
감시 정상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수동복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호의 스위치와 공용으
로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 다만, 무선식
감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
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마. 무선식 감지기의 화재 작
동 상태-----

----- . -----
----- 공통-----
----- .

바. 무선식 감지기로부터 통
신점검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문화재
용 속보기는 무선식감지기
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
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무선식감지기에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발신하는 장치
및 무선식감지기의 재확인
신호를 수신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속보기 전면에는 수동으로

<신 설>

속보할 수 있는 수동작동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하는 속보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의2에 의한 각각의 출력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작동,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의2의 각 출력신호(이하 “예비·축적·화재경보신호” 이라한다)에 의한 작동을 구분할 수 있는 적색의 표시등 또는 적색으로 표시하는 장치(이하 “표시장치”라 한다)를 각각 전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장치 부근에 각각의 작동을 구분할 수 있는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통신망에 의해 소방관서

제5조(기능) 속보기는 다음에 적합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1.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알리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신 설>

이외에 관계인 2명 이상에게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작동 및 예비·축적·화재경보신호에 의한 작동을
통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

제5조(기능) -----
-----.

1. 속보기(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작동신호-----
-----.

1의2.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를 접속하는 속보기는 수동작동스위치를 작동하거나 예비·축적·화재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예비경보신호를 수신하거나 축적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20초 이내에 통신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관계인 2명 이상에게 예비경보신호 및 축적경보신호에 의한 작동을 구분하여 통

보하여야 하며 각각의 표시장치 및 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여야 한다.

나. 화재경보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작동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하여야 하며 통신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관계인 2명 이상에게 화재경보신호에 의한 작동 및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작동을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각각의 표시장치 및 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표시장치

점등 및 음향장치에 의한 경보는 수동으로 복구하거나 정지시키지 아니하는 한 지속되어야 하며 음향장치의 작동을 정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예비경보 신호, 축적경보신호 또는 화재경보신호를 수신하는

	<u>경우 음향장치의 작동정지를 해제하고 음향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u>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화재신호를 수신하거나 <u>속보기를 수동으로</u> 동작시키는 경우 자동적으로 <u>적색 화재표시등</u> 이 점등되고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여야 하며 <u>화재표시 및 경보는 수동으로 복구 및 정지시키지 않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u>	4. ----- <u>수동</u> ----- ----- <u>화재표시등</u>----- ----- ----- <u>한다.</u>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8. 속보기는 <u>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u> 이 경우 매 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8. ----- <u>작동신호(화재경보신호를 포함한다) 또는 수동 작동스위치</u>----- ----- ----- ----- ----- ----- ----- ----- ----- -----
9. (생략)	9. (현행과 같음)
10. 삭제	
11. 음성으로 통보되는 속보내	11. -----

용을 통하여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화재발생 및 속보기에 의한 신고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2. · 13. (생 략)

제5조의2(무선식감지기와 접속되는 문화재용 속보기의 기능) ① 무선식감지기와 접속되는 문화재용 속보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1. 속보기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4호에 해당되는 신호 발신개시로부터 200초 이내에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이 저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2. (생 략)

<신 설>

----- 관계인 2명 이상의 연락처, 화재발생 -----
-----.

12. · 13.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무선식감지기와 접속되는 문화재용 속보기의 기능) ① -----

-----.

1. 속보기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4호-----

-----.

2. (현행과 같음)

2의2.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2의2호가목에 의한 통신점검신호 발신 개시로부터 제3조제14호바목에 의한 통신점검신호 및 재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소요시간은 200

3. 제3조제14호다목 및 라목에 의한 통신점검시험 중에도 다른 감지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여야 한다.

② 무선식감지기와 접속되는 문 화재용 속보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수신기의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는 다음 각목과 같다. 이 경우 데이터의 발생 시각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 마. (생략)

<신 설>

<신 설>

초 이내이어야 하며, 수신 소요시간을 초과할 경우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

3. 제3조제14호다목, 라목 및 바목-----

-----.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1항제2의2호에 해당하는 통신점검신호 및 재확인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감지기 내역

제5조의3(기록장치)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를 접속하는 속보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록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록장치는 999개 이상의 데이터
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
며, 용량이 초과할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자동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2. 속보기는 임의로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저장된 데이터는 속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복사
및 출력도 가능하여야 한다.

4.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데이터의 발생시각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on/
off 상태

나. 제5조제1의2호가목에 해
당하는 예비경호신호 수신
내역, 축적경보신호 수신
내역 및 관계인 통보 내역

다. 제5조제1의2호나목에 해
당하는 화재경보신호 수신
내역,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조작 내역 및 관계인

	<u>통보 내역</u> <u>라.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u> <u>스위치의 조작 내역</u>
제13조(표시) 속보기에는 다음 각	제13조(표시) -----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	-----
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문화재용 속보기인 경우 접	6. -----
속 가능한 감지기 형식번호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u>해당하는</u> -----
<u><신설></u>	7. <u>접속가능 수신기 형식승인</u>
	<u>번호(해당하는 경우에 한함)</u>
<u><신설></u>	8. <u>주의사항(해당하는 경우에</u>
	<u>한함)</u>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제15조(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	-----
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
시에 대하여 <u>2023년 7월 1일</u> 기	----- <u>2024년 1월 1일</u> ---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속보설비”란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알리는 설비를 말한다.
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이하 “속보기”라 한다)”란 수동작동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화재신호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화재 발생을 정보하고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통신망을 통한 해당 화재발생,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등을 음성으로 통보하여 주는 것(이하 “속보”라 한다)을 말한다.
3.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이하, “문화재용 속보기”라 한다)”란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접속(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하는 방식인 것을 말한다.

제3조(구조) 속보기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철, 도금 등으로 기계적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

적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 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며 정격전압이 60 볼트를 넘고 금속제 외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함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극성이 있는 배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오접속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커넥터로 접속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오접속이 되지 않는 형태이어야 한다.

4. 내부에는 예비전원(알칼리계 또는 리튬계 2차축전지, 무보수밀폐형 축전지)을 설치하여야 하며 예비전원의 인출선 또는 접속단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색상에 의하여 극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예비전원 회로에는 단락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퓨즈, 차단기 등과 같은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6. 전면에는 주전원 및 예비전원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와 작동 시 음향으로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화재표시 복구스위치 및 음향장치의 울림을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속보기(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목의 장치를 전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작동 시 작동여부를 표시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동 시 그 작동시간과 작동횟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9. 수동통화용 송수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표시등에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를 병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속보기는 다음 각 호의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

나. 수신기에 접속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화재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의 외부배선을 공용으로 하는 회로방식

12. 속보기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부속장치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13. 무선식 감지기와 문화재용 속보기간의 화재신호·화재정보신호는 전파에 의해 송수신할 수 있다.

14. 제13호의 기준에 따른 문화재용 속보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무선식 감지기와 문화재용 속보기간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했을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 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전파법」 제58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수동으로 무선식 감지기에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자동적으로 무선식 감지기에 24시간 이내 주기마다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식 감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무선식 감지기의 화재 작동 상태를 화재감시 정상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수동복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호의 스위치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바. 무선식 감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문화재용 속보기는 무선식감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무선식감지기에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발신하는 장치 및 무선식감지기의 재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속보기 전면에는 수동으로 속보할 수 있는 수동작동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하는 속보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의2에 의한 각각의 출력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작동,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의2의 각 출력신호(이하 “예비·축적·화재경보

신호” 이라한다)에 의한 작동을 구분할 수 있는 적색의 표시등 또는 적색으로 표시하는 장치(이하 “표시장치”라 한다)를 각각 전면
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장치 부근에 각각의 작동을 구분
할 수 있는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통신망에 의해 소방관서 이외에 관계인 2명 이상에게 수동작동스
위치에 의한 작동 및 예비·축적·화재경보신호에 의한 작동을 통
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외함) 속보기의 외함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함의 두께

가. 강판 외함 : 1.2 밀리미터 이상

나. 합성수지 외함 : 3 밀리미터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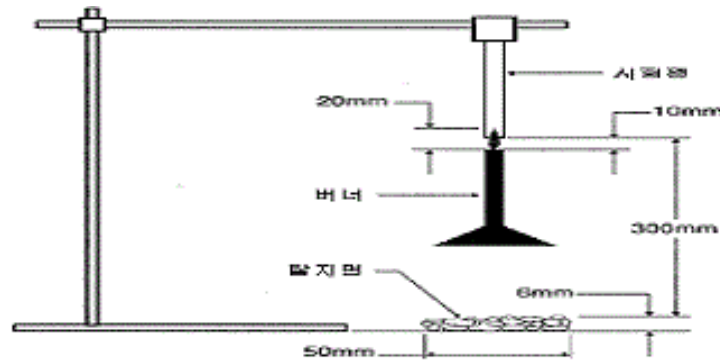
2. 합성수지 외함의 열변형 및 자기소화성

가. 합성수지를 사용한 외함(화재표시창, 지구창, 지도판, 전화기, 조
작부수납용 뚜껑, 스위치의 손잡이, 발광다이오드, 지시전기계기,
각종 표시명판 등은 제외한다)은 섭씨(80 ± 2) 도의 온도에서 24
시간 방치한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 합성수지 외함은 UL94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
는 재료이어야 하며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편은 길이(125 ± 5) 밀리미터, 폭(13 ± 0.5) 밀리미터
로 하고 두께는 제품의 외함 두께로 하며, 시편의 가장자
리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모서리의 반지름은 1.3 밀리미터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2) 버너는 메탄가스를 분당 105 밀리리터의 압력으로 공급하고 파란불꽃을 (20 ± 1) 밀리미터의 길이로 한다.
- (3) 시험편은 시험편의 아래 부분과 버너 끝단과의 거리를 10 밀리미터로 조정하여 수직으로 그림과 같이 설치한다.



- (4) 시험편에 1차로 10초간 점염(接焰: 불꽃을 접촉)한 후 버너를 제거하고 시험편에서 불꽃이 사라지는 잔염시간(t_1)을 측정한다.
- (5) 시험편에 2차로 10초간 점염(接焰: 불꽃을 접촉)한 후 버너를 제거하고 시험편에서 불꽃이 사라지는 잔염시간(t_2)을 측정하고, 불꽃이 사라진 후 불꽃 없이 연소되는 잔신시간(t_3)을 측정한다.
- (6) 시험편이 녹아내리는 경우에는 버너를 45 도로 기울이고 불꽃이 시험편에 수직으로 닿도록 하여 시험할 수 있다.
- (7) 그 밖의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UL94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 (8) 시험편은 5개로 하고, 제출된 시험편 또는 건품의 외함에서 시험편을 추출하며, 건품의 외함에서 시험편을 추출하

는 경우에는 1개의 견품에서 시험편을 중복하여 추출할 수 있다.

(9) 난연성능의 적합판정은 다음 표에 의한다.

구 분	적합 판정기준
각 시험편의 t_1 또는 t_2	30초 이하
5개 시험편의 $(t_1 + t_2)$ 의 합	250초 이하
각 시험편의 $t_2 + t_3$	60초 이하
시험중 시험편을 고정하는 클램프 위치까지 전소되는 시험편이 없을 것	

(10) 시험 중 시험편이 녹아 떨어져 바닥에 있는 탈지면이 연소해도 무방하다.

제5조(기능) 속보기는 다음에 적합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1. 속보기(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는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알리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1의2.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를 접속하는 속보기는 수동작동스위치를 작동하거나 예비·축적·화재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예비경보신호를 수신하거나 축적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20초 이내에 통신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관계인 2명 이상에게 예비경보신호 및 축적경보신호에 의한 작동을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각각의 표시장치 및 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여야 한다.

나. 화재경보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작동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하여야 하며 통신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관계인 2명 이상에게 화재경보신호에 의한 작동 및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작동을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각각의 표시장치 및 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표시장치 점등 및 음향장치에 의한 경보는 수동으로 복구하거나 정지시키지 아니하는 한 지속되어야 하며 음향장치의 작동을 정지된 상태에서도 새로운 예비경보신호, 축적경보신호 또는 화재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음향장치의 작동정지를 해제하고 음향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2.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서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3. 예비전원은 자동적으로 충전되어야 하며 자동과충전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4. 화재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자동적으로 화재 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여야 한다.
5.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소방관서에 화재발생 음성정보를 속보중인 경우에도 송수화장치를 이용한 통화가 우선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6.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화재속보 후 화재표시 및 경보를 10분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8. 속보기는 **작동신호(화재경보신호를 포함한다)** 또는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매 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9. 속보기의 송수화장치가 정상위치가 아닌 경우에도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속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10. <삭제>

11. 음성으로 통보되는 속보내용을 통하여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관계인 2명 이상의 연락처**, 화재발생 및 속보기에 의한 신고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2. 속보기는 음성속보방식 외에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 등을 이용한 속보기능을 부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은 별표 1에 따른다.

13. 제12호 후단의 별표 1에 따라 소방관서 등에 구축된 접수시스템 또는 별도의 시험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험한다.

제5조의2(무선식감지기와 접속되는 문화재용 속보기의 기능) ① 무선

식감지기와 접속되는 문화재용 속보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1. 속보기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

4제2항제4호에 해당되는 신호 발신개시로부터 200초 이내에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이 저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2. 제3조제14호다목 및 라목에 의한 통신점검 개시로부터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2호에 의해 발신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소요시간은 200초 이내이어야 하며, 수신 소요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신점검 이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

2의2.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2의2호가목에 의한 통신점검신호 발신 개시로부터 제3조제14호바목에 의한 통신점검신호 및 재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소요시간은 200초 이내이어야 하며, 수신 소요시간을 초과할 경우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

3. 제3조제14호다목, 라목 및 바목에 의한 통신점검시험 중에도 다른 감지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여야 한다.

② 무선식감지기와 접속되는 문화재용 속보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록장치는 999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용량이 초과할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자동으로 삭제한다.
2. 문화재용 속보기는 임의로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를 방지할 수 있

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저장된 데이터는 문화재용 속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복사 및 출력도 가능하여야 한다.

4. 수신기의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데이터의 발생 시각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on/off 상태

나.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호

다. 제1항제2호에 의한 확인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감지기 내역

라.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스위치의 조작 내역

마.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작동신호·수동 조작에 의한 속보 내역

바. 제1항제2의2호에 해당하는 통신점검신호 및 재확인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감지기 내역

제5조의3(기록장치)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를 접속하는 속보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록장치는 999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용량이 초과할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자동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2. 속보기는 임의로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저장된 데이터는 속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복사 및 출력도 가능하여야 한다.

4.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데이터의 발생시각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on/off 상태

나. 제5조제1의2호가목에 해당하는 예비경호신호 수신 내역, 축적경
보신호 수신 내역 및 관계인 통보 내역

다. 제5조제1의2호나목에 해당하는 화재경보신호 수신 내역, 수동작
동스위치에 의한 조작 내역 및 관계인 통보 내역

라.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스위치의 조작 내역

제6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속보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
우 해당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삭제>

2. 퓨즈

가. 퓨즈 등 과전류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표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
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3. 예비전원

가. 상온(常溫) 충방전시험

(1)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중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
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
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
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쿨롬의 정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

(1)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섭씨(-10 ± 2) 도 및 섭씨(50 ± 2) 도의 조건에서 1/20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으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 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섭씨(-10 ± 2) 도 및 섭씨(50 ± 2) 도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쿨롬의 정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

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에서 0.1 쿨롬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쿨롬으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 퍼센트 용량을 지속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 안전장치시험

예비전원은 1/5 쿨롬 이상 1 쿨롬 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제품시험에 합격한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속보기는 전원에 정격전압의 80 퍼센트 및 120 퍼센트의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8조(주위온도시험) 속보기는 섭씨(-10 ± 2) 도 및 섭씨(50 ± 2) 도에서 각각 12시간 이상 방치한 후 1시간 이상 실온에서 방치한 다음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9조(반복시험) 속보기는 정격전압에서 1,000회의 화재작동을 반복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절연저항시험) ①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메가옴(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②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절연내력시험) 제10조에 따른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 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볼트(정격전압이 60 볼트를 초과하고 150 볼트 이하인 것은 1,000 볼트, 정격전압이 150 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이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충격전압시험) 속보기는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1. 내부저항 50 옴인 전원에서 500 볼트의 전압을 펄스폭 1 마이크로초, 반복주기 100 헤르츠로 가하는 시험
2. 내부저항 50 옴인 전원에서 500 볼트의 전압을 펄스폭 0.1 마이크로초, 반복주기 100 헤르츠로 가하는 시험

제13조(표시) 속보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2.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
3. 제조자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4. 주전원의 정격전압
5. 예비전원의 종류 · 정격전류용량 · 정격전압
6. 문화재용 속보기인 경우 접속 가능한 감지기 형식번호(해당하는 경우
우에 한함)
7. 접속가능 수신기 형식승인 번호(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8. 주의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제14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성능인

증(성능인증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성능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 (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별표1]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 신고부분 프로토콜 정의서

(제5조 제12호 관련)

1. 전송규칙

가. 전송방식 : HTTP

나. 전송형식 : XML

다. 신고는 소방청에서 지정한 IP와 PORT로 다매체신고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1) IP(URL) : sokbo.119.go.kr

2) PORT : 8000(TCP)

라. 소방청 다매체신고시스템에 자동으로 신고를 위한 인터페이스 전문은 제2호의 인터페이스 정의에 따른다.

2. 인터페이스 정의

가. 기본 구조

No	필드명(한글)	필드명(영문)	DATA 타입	길이 (byte)	세부내용 및 예시	비고
1	신고유형	STTEMNT_TY_CODE	VARCHAR	9	"7000000001" 고정 (화재속보기 신고)	필수
2	화재속보기ID	SOKBO_STTEMNT_SN	VARCHAR	22	화재속보기ID (일련번호, 유일한 값)	필수
3	위험물여부	DGST_AT	CHAR	1	위험물여부 (여:Y, 부:N)	필수
4	문화재 여부	CRLTS_AT	CHAR	1	문화재여부 (여:Y, 부:N)	필수
5	성능인증번호	TRMNL_SN	VARCHAR	10	속보기 장비 성능인증	필수
6	장비 유형	TRMNL_TY	VARCHAR	10	속보기 단말기 유형 (0:일반속보기신고)	필수
7	위도	GPS_X	VARCHAR	20	GPS좌표(위도) 서울 성북구 정릉동 위도인 경우 "37.60611"	필수
8	경도	GPS_Y	VARCHAR	20	GPS좌표(경도) 서울	필수

			AR		성북구 정릉동 경도인 경우 "127.01056"	
9	신고내용	STTEMNT_CN	VARCH AR	1000	신고내용 상세 기술	필수
10	신고접수전화 번호	APLCNT_TELNO	VARCH AR	20	-없이 숫자로만 전화번호 표시	필수
11	재난종별코드	MSFRTN_KN_COD E	VARCH AR	10	재난종별코드 0040001:화재	필수
12	측위유형	GPS_CRDNT_TY	VARCH AR	30	GPS,WIFI, 그외는 빈문자	
13	신고자명	APLCNT_NM	VARCH AR	20		
14	발생일시	OCCRRNC_TIME	VARCH AR	14	YYYYMMDDHH24MI SS (예시:202009202021 22)	필수
15	주소구분값	ADDR_TY	VARCH AR	1	주소구분 : "1"(법정동)	필수
16	시도 코드	CTRD_CODE	VARCH AR	2	법정동 시도 코드	필수
17	시군구코드	SIGNGU_CODE	VARCH AR	3	법정동 시군구코드	필수
18	동코드	DONG_CODE	VARCH AR	3	법정동 동코드	
19	리코드	LI_CODE	VARCH AR	2	법정동 리코드	
20	산여부	MNTN_AT	CHAR	1	산 여부(여:1, 부:0)	
21	주지번	MNNM	VARCH AR	4		
22	부지번	SLNO	VARCH AR	4		
23	상세주소	ETC_ADDR	VARCH AR	100		필수
24	도로명 관리 번호 [새주소]	RN_MGR_NO	VARCH AR	12		
25	지하여부	UNDGRND_SE	VARCH AR	1	지상 0 :, 지하 1 :, 공중 : 2	
26	건물 본번	BULD_MNNM	VARCH AR	5		

27	건물 부번	BULD_SLNO	VARCHAR	5		
28	건물명	BULD_NM	VARCHAR	20		

※ 다매체신고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송신할 때 위의 형식을 따른다.

나. 공통사항

- 1) 인터페이스 정의에서 기술된 항목 중 필수항목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값을 입력해서 전송해야 하며, 선택항목인 경우에는 Null 값을 전송하거나 입력 값을 전송하여야 한다.

※ 작성 예) 필수항목 : 시도코드(CTRD_CODE)

<CTRD_CODE>**26**</CTRD_CODE>

▲
필수 입력

※ 작성 예) 선택항목 : 건물명(BULD_NM)

<BULD_NM></BULD_NM>

▲
Null 값

※ 필수항목 : 신고유형, 화재속보기ID, 위험물여부, 문화재여부, 장비일련번호, 장비유형, 위도, 경도, 신고내용, 신고접수전화번호, 재난종별코드, 발생일시, 주소값 구분, 시도코드, 시군구코드, 상세주소

※ 선택항목 : 필수항목을 제외한 필드

- 2) 입력 값이 한글인 경우 1글자가 3Byte, 영문,숫자인 경우 1Byte로 계산하여야 한다.

※ 작성 예) 홍길동 → “홍”(3Byte) + “길” (3Byte) + “동” (3Byte) → 9Byte

다. 필드별 구조

- 1) 화재속보기ID(SOKBO_STTEMNT_SN)

가) 화재속보기ID는 성능인증을 받은 다른 화재속보기 ID와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화재속보기ID는 22Byte 이내로 등록하여야 한다.

- (1) 전송 단말기 일련번호 필드는 제조사 단말 고유 ID를 입력하여야 하며, 고유 ID는 처음 2자리는 영문으로 2자리로 한다. 다만, 제조사가 2개 이상의 성능인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영문으로 3자리로 할 수 있다.

※ 성능인증 시 고유 ID의 처음 2자리 또는 3자리는 성능인증 별로 부여한다.

(2) 처음 2자리 : 제조사명(영문 2자리 또는 3자리), 다음 2자리 : 생산년도(뒤에 두자리만 표시), 다음 자리 : 제품생산번호

※ 작성 예) HK20101

HK : 제조사 이니셜 두자리

2010 : 2010년

1 : 제품 생산번호

※ 작성 예) HK20101001

HK : 제조사 이니셜 두자리

2010 : 2010년

1001 : 제품 생산번호

2) 성능인증번호(TRMNL_SN)

가) 성능인증 승인시 받은 성능인증번호를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인증 번호 중 ‘속보’는 ‘SB’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작성 예) 성능인증번호 : 속보23-1 → SB23-1 / 속보23-50 → SB23-1

3) 위도/경도(GPS_X, GPS_Y_)

가) 화재속보기 설치 장소의 GPS좌표를 입력해야 한다.

나) 화재속보 다매체신고를 위한 좌표계는 지리좌표계(EPSG4326)를 사용해야 한다.

※ 위도와 경도는 구글지도 또는 GPS 좌표 앱 등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작성 예) 소방청 → GPS_X : 36.4841 GPS_Y : 127.2612

4) 신고내용

신고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며 한글은 최대 500자까지 입력가능하다. 다만, 신고내용은 최대 1000byte까지이며, 영문의 경우 최대 1000자(한글 500자)입력이 가능하다.

※ 작성 예)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에 의한 신고입니다. 속보기 설치위치 ○○○○도 ○○○시 ○○○로 ○○○이며 홍길동건물에 있으며 수신기의 설치 위치는 ○○○○입니다. 대표전화번호는 0000000000이며 관계인 연락처는 0000000000 및 0000000000입니다.

5) 신고접수전화번호

가) 신고접수전화번호는 ‘-’ 없이 숫자로만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번호, 이동전화번호, 070 번호이어도 무방하다.

※ 작성 예) 02-1234-5678 → 0212345678

010-2345-6789 → 01023456789

070-5678-1234 → 07056781234

나) 신고접수전화번호는 화재발생시 연락이 가능한 번호이어야 한다.

6) 발생일시

가) 화재 발생일시는 연월일시분초로 표현한다.

나) 시간 표시법은 24시 체제(YYYYMMDDHH24MISS)로 표현한다.

※ 작성 예) 2022년03월27일 오전 10시30분27초 : 20220327103027

2022년03월27일 오후 03시30분27초 : 20220327153027

7) 주소 구분값

주소 구분값은 '1'(법정동)로 한다.

구분	크기	비고
주소 구분값	1 byte	1:법정동

8) 시도코드, 시구분 코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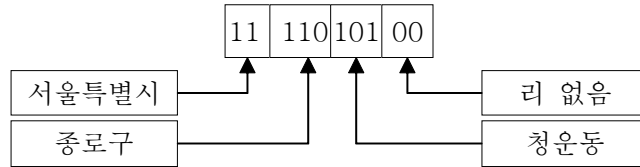
구분	크기	내용
시도코드	2 byte	ex) 서울특별시 : 11
시군구코드	3 byte	ex) 종로구 : 110
동코드	3 byte	ex) 청운동 : 101
리코드	2 byte	ex) 없음 : 00, 내양리 : 25
산여부	1 byte	여:1, 부:0
주번지	4 byte	ex) 415
부번지	4 byte	ex) 15
상세주소	100byte	최대 한글 50글자 ex) OO빌딩

※ 법정동 주소 코드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https://www.code.go.kr/>)에서 법정동 정보를 조회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7개 시도 코드

서울특별시 : 11, 부산광역시 : 26, 대구광역시 : 27, 인천광역시 : 28, 광주광역시 : 29, 대구광역시 : 30, 울산광역시 : 31, 세종특별자치시 : 36, 경기도 : 41, 강원도 : 42, 충청북도 : 43, 충청남도 : 44, 전라북도 : 45, 전라남도 : 46, 경상북도 : 47, 경상남도 : 48, 제주도 : 50

※ 작성 예) 법정동 코드 : 11110101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3. 전문 예시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no"?>
```

```
<WDS>
```

```
<Set name="default" version="1.0">
```

```
<Service key="" name="MARKET" version="1.0">
```

```
<Values>
```

```
<STTEMNT_TY_CODE>700000001</STTEMNT_TY_CODE> // 신고유형 : 700000001로 고정
```

```
<SOKBO_STTEMNT_SN>HK20101</SOKBO_STTEMNT_SN> // 화재속보기ID
```

```
<DGST_AT>Y</DGST_AT> // 위험물여부
```

```
<CRLTS_AT>N</CRLTS_AT> // 문화재 여부
```

```
<TRMNL_SN>SB23-1</TRMNL_SN> // 성능인증번호
```

```
<TRMNL_TY>1</TRMNL_TY> // 장비 유형 속보기 단말기 유형 (0 : 일반 속보기 신고)
```

```
<GPS_X>37.60611</GPS_X> // 위도
```

```
<GPS_Y>127.01056</GPS_Y> // 경도
```

```
<APLCNT_TELNO>01012345678</APLCNT_TELNO> // 신고접수전화번호
```

```
<STTEMNT_CN>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에 의한 신고입니다..</STTEMNT_CN> // 신고내용
```

```
<APLCNT_NM>신고자</APLCNT_NM> // 신고자
```

```
<MSFRTN_KN_CODE>0040001</MSFRTN_KN_CODE> // 재난종별코드
```

```
<GPS_CRDNT_TY></GPS_CRDNT_TY> // 측위유형(GPS,WIFI,그 외는 빈문자)
```

```
<OCCRRNC_TIME>20200920202122</OCCRRNC_TIME>
```

```
// 발생일시 YYYYMMDDHH24MISS (예시:20200920202122)
```

```
<ADDR_TY>1</ADDR_TY> // 주소구분 1로 고정
```

```
<CTRD_CODE>26</CTRD_CODE> // 법정동 시도 코드
```

```
<SIGNGU_CODE>110</SIGNGU_CODE> // 법정동 시군구코드
```

```
<DONG_CODE>000</DONG_CODE> // 법정동 동코드
```

```
<LI_CODE>00</LI_CODE> // 법정동 리코드
```

```
<MNTN_AT>0</MNTN_AT> // 산 여부(여:1, 부:0)
```

```
<MNNM>1</MNNM> // 주변지
```

```
<SLNO>2</SLNO> // 부번지
```

```
<ETC_ADDR>상세주소1</ETC_ADDR> // 상세주소
```

```
<RN_MGR_NO>00000</RN_MGR_NO> // 도로명 관리 번호[새주소]
```

```
<UNDGRND_SE>0</UNDGRND_SE> // 지하여부(지상 0 ; 지하 1 ; 공중 : 2)
```

```
<BULD_MNNM>11</BULD_MNNM> // 건물 본번
```

```
<BULD_SLNO>22</BULD_SLNO> // 건물 부번
```

```
        <BULD_NM>건물명</BULD_NM>          // 건물명
    </Values>
</Service>
</Set>
</WDS>
```